



뉴욕주 법원 행정 처

에서는 구두 또는 필기에 의한 영어 의사 소통 능력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뉴욕주의 모든 법원과 부속 기관에서 일어나는 법정 절차에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의 법정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뉴욕주 법원 행정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외국어 법정 통역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북경어와 광둥어), 베트남어, 필리핀의 타갈로그어, 인도어 (벵갈어, 펀잡어, 구자라티어, 힌두어, 우르두어), 파르시어, 아랍어, 히브리어, 이디쉬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루마니아어, 폴란드어, 크로아시아어, 세르비아어, 알바니아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헤이티의 크리올어, 화란어, 미국식 수화, 아프리카의 월로프어

법정 통역이 상주하지 않는 법원

에서는 개인 또는 통역 서비스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어 또는 수화 통역을 제공합니다.

법정 통역 업무에 관해서 어디에 문의하면 됩니까?

신속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구두나 서면 또는 수화 통역 업무를 전담하는 법정 통역 사무처가 제반 법정 통역에 관한 업무 지침과 업무 절차를 조정 감독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이 있으면 법정 통역 사무처의 담당직원에게 접촉하시면 됩니다.

기타정보

가 필요하시면 다음의 주소로 전자 우편 또는 전화나 서면으로 문의하십시오.

법정 통역 사무처

OFFICE OF COURT INTERPRETING SERVICES

OCA DIVISION OF COURT OPERATIONS

25 Beaver Street, 8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04

(646) 386-5670

courtinterpreter@courts.state.ny.us

InterpreterComplaints@courts.state.ny.us